#### 오산시의회 공고 제2019-22호

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년 8월 21일

오산시의회의장

#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상복 의원 대표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○ 오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있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운영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수정·보완하고,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개 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할인판매 외 추가포인트 지급을 신설하여 명시함(안 제5조제1항).
- 나. 전자지역화폐에 대한 가맹점 정의를 보완하여 명확하게 함(안 제7조제1항).
- 다. 개인의 지역화폐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, 법인의 구매한도 및 할인 또는 추가포인트 지급률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1항).
- 라. 개별가맹점 상인의 종이지역화폐 구매 시 할인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제2항).

- 마.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함(안 제14조제1항).
- 바.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의 종이지역화폐 환전 한도를 월 1천만원에서 월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(안 제21조제1항).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의견제출

○ 제출기일 : 2019년 8월 26일까지

○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
○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○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
· 우편번호 : 447-701

·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
· 전 화: 031)8036-8023, ·팩 스: 031)375-2875

·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□ 조	례	명 :	오산시	오산지역	벽화폐	발행	및	운영	조례	일부개정	<b> 조례안</b>
□ 의견	<sup>1</sup> 제출	자									
	성명(단	<u></u>	3):								
O 주	<u> </u>	<u>-</u>	소 :								
○ 전	<u></u> 화	번 3	호 :								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	견	н) л
소네인 대공	찬성	반대	7	① 	비고

#### 오산시 조례 제 호

#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할인판매"를 "할인판매 또는 추가포인트 지급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가맹계약"을 "계약한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"으로, "개별가맹점"을 "가맹점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전단 중 "할인하여"를 "할인 또는 추가포인트를 제공하여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30만원"을 "50만원"으로, "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"를 "법인의 경우 구매한도 및 할인 또는 추가 포인트 지급률을 규칙으로 달리 정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가맹점 상인의 종이지역화폐구매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할인"을 각각 "할인 또는 추가포인트 지급"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10명"을 "20명"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단서 중 "1천만원"을 "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2천만원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5조(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지 제5조(재정적 지원) ① ------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, 판매·환전 수수료, 할인판매 또는 추가포인트 지급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시장은 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-----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 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----- 계약한 신용카드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 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--- 가맹점----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1조(할인 및 수수료) ① 시장 제11조(할인 및 수수료) ① ----은 지역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-- 할인 또는 추가포인트를 제 있다. 다만 지역화폐의 할인구 공하여 --. ---------- <u>50만원</u>--매는 개인의 경우 월 30만원을

초과할 수 없으며, <u>법인 및 가맹</u>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・③ (생략)

제12조(지역화폐 활성화 시책) ① 지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있다.

- 1. 설·추석 명절 :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
- 2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: 100분 의 10범위에서 할인
- ②・③ (생략)

제14조(협의회의 구성) ① 협의회 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

<u>법인의 경우</u>
구매한도 및 할인 또는 추가포
인트 지급률을 규칙으로 달리
<u>정</u>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
구하고 개별가맹점 상인의 종이
지역화폐 구매에 대하여는 할인
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
같음)
제12조(지역화폐 활성화 시책) ①
<b>.</b>
1
<u>할인 또는 추가포인</u>
<u>트 지급</u>
2
<u>할인 또는 추가</u>
포인트 지급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협의회의 구성) ①
<u>20명</u>
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하나의성이 10분의 6을 초과 할 수 없다.

#### ② ~ ⑤ (생 략)

제21조(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)
① 시장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
개별가맹점에게 종이지역화폐
를 환전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
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환전
한도를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
있다.

②・③ (생략)

· ② ~ ⑤ (현행과 같음)	
제21조(개별가맹점에 대한	환전)
①	
월 1천만원을 초과하는	경우
<u>에는 월 2천만원</u>	
②・③ (현행과 같음)	